

1. 개정이유

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격이관에 따라 인용 법률정비(안 제26조, 별지 제22호 서식)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되어 있던 경영지도사가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(’21.4.8 시행)로 이관

나.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7조)

-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

다.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(안 제25조의4 별표 10의2)

-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24조제1호”를 “영 제24조제2항제1호”로, “영 제24조제3호”를 “영 제24조제2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4조제4호”를 “영 제24조제2항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10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중전의 다목) 1)과 2)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의 개별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목 1) 중 “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”을 “위반행위가”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

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지 제22호서식 신청인 첨부서류란 다목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(제25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(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)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	등록취소		
나.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	등록취소		
다. 법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	등록취소		
라.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	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	등록취소		
마.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
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15일			
신청인	상호	대표자	
	법인 소재지	전화번호	
	법인등기번호	법인설립일	
	신청 산림사업 종류	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(등록번호:)	
	자본금 보유현황	기술인력 보유현황	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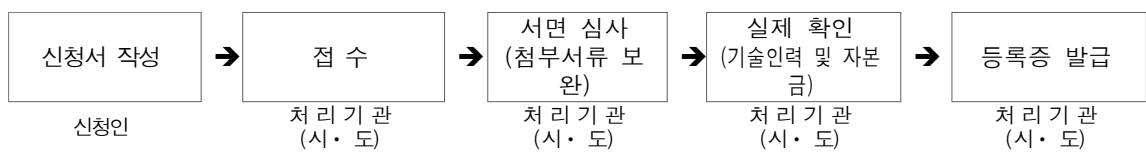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법인인감증명서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.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(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기술인력 명단,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.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.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(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
작성 방법

신청 산림사업 종류란과 기술인력 보유현황란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)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 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 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.·나. (생 략) 다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경 영지도사(「중소기업기본 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 3. ~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제26조(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 도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)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 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 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	제27조(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) ① ----- 영 제2 4조제2항제1호----- ----- -----

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
첨부하여 시·도지사(영 제24조
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
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
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를
말한다)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
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
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
인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
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
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
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
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
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변경신
청을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-----영 제24조
제2항제3호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영 제24조제2항제4호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